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 (2015.8.20.~2020.8.19.)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위탁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구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 및 제4항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3. 업무 재계약 내역

가. 시설 및 위탁현황

소재지	시설장	개관일	직원	위탁운영법인	現 운영법인 위탁기간	비고
한내로69-15	김정석	2012.8.20.	4명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이사장: 장혜경)	2015. 8. 20.~ 2020. 8. 19. (5년)	위탁기간 만료

나. 주요 위탁내용

- 1) 재계약 기간 : 2020. 8. 20. ~ 2025. 8. 19.(5년)
 - 2) 위탁업무
 -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 등
 - 3) 선정 방법 :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시 재계약
- ※ 70점 미만시 위탁법인 모집 공고

4. 재계약 추진의 필요성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하여 그동안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5. 재계약 추진일정(안)

- 가. 2020. 7. 20.한 :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심의, 선정
- 나. 2019. 8. 19.한 : 위탁법인 재계약 공고 / 위수탁 협약 체결
- ※ 선정결과에 따라 신규 위탁법인 공모시 일정 조정 가능

6. 관계법령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 및 제4항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
|--------------------|-----------------------------|
|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2. 위탁계약기간 |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7.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
8. 예산지원 내용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